

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※ 모든 서류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[2022.3.29(화)] 이후 발행분에 한함.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
 ※ 아래 서류 외 사전당첨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당사 현장접수처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.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 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공급신청자 본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필수 제출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"상세"로 발급)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기관추천 특별공급	○		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	본인	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(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(일반)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)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		○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 ·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(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, 건축물관리대장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, '본인 발급분'에 한함.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위임장	본인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